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3. 23.

발의자 : 고영인 · 김남국 · 박주민
윤준병 · 이탄희 · 서동용
황운하 · 전해철 · 김용민
이수진 · 조오섭 · 오영환
임오경 · 강훈식 · 양향자
박정 · 서삼석 · 이장섭
이학영 · 윤미향 · 이병훈
김의겸 · 홍정민 · 김영배
인재근 · 김철민 · 김상희
김홍걸 · 조정식 · 김승남
권칠승 · 최종윤 · 이원욱
박광온 · 최강욱 · 신현영
이형석 · 장철민 · 송갑석
김한정 · 이성만 · 홍영표
최기상 · 진선미 · 김두관
전재수 · 서영교 · 김영주
김한규 · 박재호 · 유정주
강민정 · 송재호 · 임호선
전혜숙 · 윤재갑 · 안호영
민병덕 · 박용진 · 김민철
이용빈 · 김경만 · 양아원영

유기홍 · 주철현 · 김원이
임종성 · 노웅래 · 정춘숙
최혜영 · 신정훈 · 홍성국
남인순 · 천준호 의원
(7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국가는 4·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포함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음.

하지만 4·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·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,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에 대해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현행법에서는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4·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(이하 부상 잠수사)가 제외되어 있어, 피해자 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.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·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,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

책임을 강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동 법에 4·16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에 ‘4·16세월호참사와 관련 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(이하 부상 잠수사)’를 포함함(안 제2조제3호라목 신설).
- 나. 4·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기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제3항 단서).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4·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(공무원을 제외한다. 이하 “부상 잠수사”라 한다)

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③ 생활지원금 등의 지금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금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만, 생활지원금 중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· 2. (생 략) 3. “피해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가. ~ 다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.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4·16세월호참사와 관련 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(공무원을 제외한다. 이하 “부상 잠수사”라 한다)</u> <u>마.(현행 라목과 같음)</u>
제23조(생활지원금 등) ① · ② (생 략) <u>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,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단서 신설></u>	제23조(생활지원금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생활지원금 중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</u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